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최기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827 발 의 년 월 일 :2021년 10월 15일

발 의 자:최기찬 의원(1명)

찬 성 자 :김상진, 김생환, 김호평,

양민규, 이호대, 전병주, 최 선, 추승우, 홍성룡

의원(9명)

1. 제안이유

-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사는 독재와 절대 권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변혁을 이끌어 온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의의는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계승·발전되어야함.
- 그러나 민주화운동사는 교과 편제상 최후반부에 배치되어 학기말에 교육이 이루어져 체계적인 학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이에 내실 있는 민주화운동사 교육을 통하여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의의 계승·발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민주시민 교육에 광복 이후 독재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민주화운동의 역사 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고자함(안 제5조제7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광복 이후 독재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민주화운동의 역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 <신 설></u>	7. 광복 이후 독재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민주화운동의 역사